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2585 |
|----------|------|

제출일자 : 2024. 11. 5.

제 출 자 : 달성군수



## 1. 개정이유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안 제6조)

-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의 구역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개 이상으로 밀집기준 완화
- 면적 산정 시 심의를 거쳐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

## 3. 조례안 : 따로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4. 10. 7. ~ 10. 27.) 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과)와 합의되었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의 구역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이 면적 산정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1. 상업지역: 25개 이상 밀집
2. 상업지역 외 지역: 20개 이상 밀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용도 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하거나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해당구역 내의 지번과 면적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골목형<br>상점가<br>개 요 | 명 칭  | 대표자 성명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용도지역 |   |     |
|                   | 규모   | 토지 면적:      m <sup>2</sup> , 건물 연면적:      m <sup>2</sup> , 영업장 면적:      m <sup>2</sup> , 점포 수:      개 |     |
| 상인 조직             | 명칭   | 대표자 성명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설립일  | 회원 수  |     |
| 신청사유              |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  |           |
|------|--|-----------|
| 첨부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구역 내에서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li> <li>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li> <li>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li> <li>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li> </ol> | 수수료<br>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 점 가 명 :
2. 대표자 성명 :
3. 소 재 지 :
4. 면적/점포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직인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u>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u></p>                                      | <p>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의 구역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이 면적 산정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업지역: 25개 이상 밀집</li> <li>2. 상업지역 외 지역: 20개 이상 밀집</li> </ol>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용도 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하거나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p> |
| <p>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p> <p>① ~ ② (생략)</p> <p>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p> | <p>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br/>-----<br/><u>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u><br/>-----<br/>-----.</p>   |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7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 및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또는 구역도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p>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li> <li>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해당 구역 내의 지번과 면적</li> <li>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li> <li>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li> </ol> <p>②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li> <li>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li> <li>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li> </ol> |

## 관 계 법 령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